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April 10 2023

Samjong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2023-10 공고: 2022 년 미국 APA 연차보고서

미국 과세당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2023 년 3 월 29 일, 2022 년 동안의 사전승인제도(APA) 연례 보고서를 담아 개선된 버전의 '2023-10 공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APA 제도의 이력, 구조 및 활동을 설명하는 24 차 발행 보고서로, 정상가격 기준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보고서는 아닙니다.

2023-10 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에 체결된 APA는 총 77건으로, 이 중 갱신 APA이 차지하는 비율은 55%입니다. (2021년의 경우, 63%)
- 과거와 마찬가지로, 2022년에 체결된 APA의 절반 이상은 해외 모법인과 미국 내 자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것입니다.

- 2022년 체결된 APA의 대다수는 재화 및 서비스거래에 관한 것이지만, 약 22%는 (IRS가 다루는 APA 및 MAP 건들 중 가장 까다로운 업무로 분류되는) 무형자산 사용 허여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 일방 및 쌍방 APA(최초 신청 및 갱신 APA포함)의 타결까지 소요되는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2.7개월, 2021년 35.1개월, 2022년 43.4개월로 점차 증가 추세입니다.

[2022 년 APA 통계]

	일방 (Unilateral)	쌍방 (Bilateral)	다자간 (Multilateral)	계
신청 접수 건	22	154	7	183
체결 건	10	66	1	77
진행 중인 건 (연말 기준)	54	480	30	564
갱신 체결 건	10	32	-	42
진행 중인 갱신 건 (연말 기준)	37	185	15	237
중단 및 취소 건	-	-	-	0
철회 건	1	5	-	6

[KPMG 의견]

APA 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은 여전히 강하며, 2022 년 APA 신청은 183 건으로 증가함. 반면, 체결 건수는 2021 년 124 건에서 2022 년 77 건으로 크게 감소함.

IRS 조세조약 및 이전가격 운영이사 책임대행 Nicole Welch 는 KPMG-USCIB TaxWatch 웹캐스트 "조세 확실성 - 현상유지를 넘어서"에서 2022 년 체결 건의 감소는 2021 년 동안은 팬데믹 이전 접수 건과 경상적인 APA 들을 종결한 반면, 2022 년에 처리해야 할 APA 목록에는 처리 기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복잡한 사례와 최신 APA 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으로 설명.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필라 2 도입을 위한 다자간 조세 공조 협약 서명

베트남은 2023년 3월 22일 조세행정과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이행하고자 다자간 조세 공조협약(Multilater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이하 "MAAC")에 서명하였습니다. MAAC는 협정국(베트남이 추가되어 현재 147개국으로 구성됨)을 대상으로 정보교환, 국가 간 감사 및 감찰, 세금징수 지원,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세행정조치를 수립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조세조약 남용 및 '조세조약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에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포함한 각국의 OECD/G20 BEPS 프로젝트의 결과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존 양자간 조세조약의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베트남은 MAAC에 서명함으로써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를 포함한 OECD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에 대한 이행 계획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약의 가입은 베트남의 국제 조세제도 중 올해 가장 기다려지는 변화의 시작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BEPS 필라 2의 도입 이후 글로벌최저한세 이행에 전념해 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국가가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세 및 비과세 인센티브 제도의 개정 가능성을 포함하여 OECD 규정 및 지침을 채택하기 위한 국내 규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을 보유한 베트남 기반의 대기업과 베트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해외 기반의 다국적기업들은 필라 2 개발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룹이 소재한 여러 국가 내 과세당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충분한 인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KPMG 의견]

베트남을 포함하여 신규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OECD에 가입하는 등, 전세계적인 이전가격 BEPS 및 조세 정책에 대한 공조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납세자들은 해외 진출국들의 규정 개정에 따른 이전가격 모니터링 및 문서화 보완이 권고됨.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1 서 1728, 2023.02.07

제목: 청구법인의 코엑스 전시장은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장소이며,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인 임대활동과 관련해서는 보조적인 장소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사실관계

- 청구법인 본사는 미합중국에 설립된 국제 민간 반도체 산업협회로서, 국내 전시회 개최를 위해 매년 2월경 ○○○ 전관을 8일간 임차하여 전시공간을 전시회 참가업체에 3일간 임대(이하 "쟁점 활동")하고 있는 바, 2008년까지는 청구법인 본사의 한국지점(영업소)이 관련 전시장 임대수입을 인식하고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청구법인 본사의 한국자회사가 발생경비의 110%를 보상받는 수수료만 국내에 신고함.
- 조사청은 청구법인 본사가 20년간 운영한 국내지점(국내고정사업장)을 폐쇄하고, 실제 기능은 동일하나 2009년 이후 자회사로 사업 구조를 형식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고 국내원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2020. 7. 6. 2013년 제1기 ~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2013 ~ 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쟁점

- ① 국내 전시장을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를 종속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③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음액은 고정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국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법인 및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p>1) 전시장 대관 행위는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보조적 활동이며, 청구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장 대관업무는 고유 목적사업 중 하나인 ④기술 플랫폼 제공 사업의 일부 업무로서 수행하는 것임 - 청구법인의 쟁점 활동 관련하여 17%의 큰 이익률이 발생하였으나, 고유 목적사업은 큰 결손이 발생하여 고유 목적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임. 즉, 이는 고유 목적사업을 자금 측면에서 보조하는 활동임 - 비영리법인의 특성 상 매출/비용의 	<p>1) 청구법인 본사가 장기간(30년 이상) 직접 전시장을 임차하고 대관하는 활동은 본질적 사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국내 전시장은 일반 고정사업장에 해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고정사업장의 요건인 장소에 대한 배타적 법적 사용권을 보유하며, 장기간(30년 이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사용대가를 수취하는 활동은 본사의 전시회 사업 부문의 수익창출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임 - 전시회 사업은 본사의 별도의 단독 영리사업이며, 국내에서 수행되는 전시회

<p>규모가 아닌, 전체 종사 직원의 고유 목적사업별 직원 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쟁점 활동으로는 3명만이 근무(전체 인원의 5%)하고 있어 비중이 매우 작음</p> <p>- 지점→자회사 변경이유: 초기에는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나, 차츰 회원사가 증가로 홍보활동의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업무수탁행위만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설립</p>	<p>사업부문만 한정할 경우 전시회 등에서 발생한 비용이 총 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p> <p>- 따라서 국내 전시회 활동을 통한 부스의 임대행위는 참가업체로부터 수익을 획득하는 데 있어 본질적 활동임이 자명</p>
<p>2) 한국자회사는 계약조건 협상권이 없으며 단순한 연락담당자 또는 업무수탁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간주고정사업장이 아님</p> <p>- 모든 일정, 가격 및 배정순위 결정은 청구법인 본사가 수행, 한국자회사는 "지원용역회사"로,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p> <p>- 가격결정 및 선호위치에 대한 계약체결권한 및 계약체결주체 또한 본사의 고유권한임</p> <p>- 코로나로 취소된 20-21년 행사에 대해 모든 손실을 본사가 부담. 자회사는 오히려 20년에 발생한 비용의 110%를 용역 대가로 수취</p>	<p>2) 한국자회사는 본사를 대신해 계약체결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본질적 활동을 수행하므로 국내에 간주고정사업장을 보유함</p> <p>- 간주 고정사업장의 요건인 종속성(10% 보전받고 전적으로 본사를 위한 사업), 계약체결권(본사 최종승인없이 신청서를 자회사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즉시 계약 성사)을 보유하며, 또한 전시회 개최를 위해 본질적 활동을 수행함</p> <p>- 계약이란 청약/승낙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므로 자회사의 역할과는 무관함. 오히려 본사는 계약체결/취소 과정에서 대면협상 및 체결 과정이 전무함</p> <p>- 본사가 전적으로 결정권이 있다는 점이 한국자회사의 계약 체결권 행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p>
<p>3) 고정사업장/간주고정사업장 일지라도,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금액은 한국발생 수입이 아니라, 국내 고장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국한되어야 함</p> <p>-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은 해당고정사업장을 독립된 제3자로 가정하고 그에 따른 귀속금액을 정상가격원칙에 따라 계산해야 함</p> <p>-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내 소득금액에 대해 국외기업에 귀속될 분이 명확히 있으며, 이를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함. 본건에서도, 국내소득금액 중 본사 귀속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계산했어야 함.</p>	<p>3) 전시회 매출에서 청구법인의 직접비 및 간접비까지 모두 공제했으므로 계산방식은 적법함</p> <p>- 최근 대법원 판례의 건은 당시 처분청이 납세자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해 추계결정 방법으로 소득액을 산출하여 과다하게 산출된 것으로,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전부 취소한 것임. 따라서 사실관계 자체가 다름</p> <p>- 과거 한국지점이 신고한 과세소득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계산된 적법한 방식으로, 과거 지점과 현재 자회사의 기능 및 위험의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형식적인 사업구조변경을 통해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한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심판원과 법원 또한, 이익분할법 적용 시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한 바, 본 건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조차 하지 않고 과세하였으니 부당함 - 처분청의 계산방식은 총괄주의로, 한미조세조약이 규정한 귀속주의와 배치됨 - 한국지점의 기능과 역할이 동일할 것이라는 단정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과거 한국지점이 하던 계산방식을 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은 옳지 않음 	
---	--

4) 판단

- 쟁점 ①: 처분청은 전시장이 청구법인 본사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 활동은 일반적인 전시장 부스 임대와 달리, 회원사가 부스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 중 기술플랫폼 제공 사업의 일부 업무로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쟁점 활동은 별도의 영리사업이 아닌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에 해당함. 특히, 쟁점 활동 관련 수입금액은 전액 고유 목적사업의 손실 보전을 위해 사용되는 점을 동시 고려해보면,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전시장을 청구법인 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②: 계약체결권이라 함은,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상담할 수 있는 권한으로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 한국자회사는 청구법인 본사를 대신하여 어떠한 형태의 계약을 협상하거나 체결,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여 한국자회사 직원이 수행하는 행위는 일반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정업무로 보이는 점, 중요 사항은 청구법인 본사에 의해 이미 확정되었고 그 확정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한국자회사에 계약체결권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위와 같은 한국자회사의 활동은 쟁점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한국자회사가 청구법인 본사의 간주고정사업장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 ③: 쟁점①·②가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



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 물품에 대한 FTA 적용 ('23.03.20 FTA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1) FTA 관세법 개정사항

- 관세청은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FTZ)에 보관하였다가 국외 반출(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FTA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한다고 발표함.
- 기존에는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국외반출(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었고, 상대국 세관의 검증에 대응하기 어려워 FTA활용을 하지 못했었음.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국외반출신고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업무 처리 지침 ('23.04.03 제정)

- 관세청은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업무 처리 지침」을 발표함.
- 동 지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업체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보관·제출해야 함(FTA관세법 제4장에 따른 원산지 조사, 법 제44조에 따른 벌칙 대상임).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 ('23.03.31)

1) 美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세부 지침 개요

- '22.08.16 IRA 발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최대 \$7,500 세액공제 요건을 발표한 후 '22.12. 백서(White paper)를 통해 IRA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
- '23.03.31에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에 대한 세부 지침이 포함된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문(Notice for Proposed Rulemaking, NPRM) 발표함. 본 세부 지침은 '23.04.18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 차량 목록도 04.18 업데이트 후 매월 갱신할 예정이다.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최종 조립'이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발생해야 하며,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 충족시 \$3,750,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 시 \$3,750으로 최대 \$7,50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IRA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구분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	배터리 부품 요건
내용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한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
비율	'23년 40% → '24년 50% → '25년 60% → '26년 70% → '27년 80%로 단계적 상승	'23년 50% → '24~'25년 60% → '26년 70% → '28년 90% → '29년 이후 100%로 단계적 상승
세부 지침	핵심 광물의 추출·가공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재활용의 경우 북미)에서 발생한 경우 '적격 핵심 광물'로 간주	양극 전극, 음극 전극,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등이 '배터리 부품'에 포함 양극·음극 활물질 파우더 등은 '구성 재료'로 분류하여 배터리 부품에 불포함
제외	'25년부터 중국 등 해외 우려 기업(a foreign entity of concern)이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한 핵심광물이 포함된 전기차는 세액공제 제외	'24년부터 해외 우려 기업이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는 세액공제 제외

2) 지침 주요 내용

[핵심 광물 요건]

- 지침에서는 핵심 광물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3단계 절차를 제시함.

1 단계	<p>핵심 광물별로 각각의 공급선* 확인</p> <p>* 핵심광물의 추출, 가공 및 재활용을 통해 구성재료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공급망</p>
2 단계	<p>각 공급선별 핵심광물의 적격성을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광물 전체 공급망(추출·가공)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발생한 경우, '적격 핵심 광물(qualifying critical mineral)'로 간주 ** 해당 비율은 '23~'24년에 적용되며, '25년부터 비율이 상승될 가능성 시사 - 예) 인니 등 FTA 未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産으로 간주
3 단계	<p>적격 핵심광물 가치 비율 계산</p> <p>[계산] 적격 핵심광물 가치비율 = '적격 핵심 광물'의 가치 합계 ÷ 배터리에 포함된 모든 핵심 광물 가치</p>

- “구성 재료(constituent material)”의 정의를 “배터리 부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핵심 광물을 함유한 재료”라고 규정하고, 이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 대상으로 명시함.

구성 재료의 예) 배터리 셀에 사용되는 양극/음극 활물질용 파우더, 호일, 고체 전극용 금속, 바인더, 전해질 염 및 전해질 첨가제 등

- 미국의 FTA 체결국을 FTA를 체결한 국가*뿐 아니라 미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배터리 핵심광물과 관련하여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포함시킴. 이에 따라 미국과 최근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한 일본이 포함되었으며 향후 국가 추가 가능성을 시사함.

*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대한민국,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배터리 부품 요건]

- 지침에서는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4단계 절차를 제시함.

1 단계	<p>배터리 부품별 제조·조립 활동이 북미 내에서 발생했는지 확인</p> <p>- 해당 조건 충족 시 ‘북미 배터리 부품(North American battery components)’으로 간주</p>
2 단계	<p>배터리 부품의 증분가치(incremental value)* 및 북미 귀속 여부 결정</p> <p>[계산] 증분가치 = 해당 배터리 부품의 전체 가치 - 배터리 부품을 제조/조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치</p> <p>북미 배터리 부품의 총 증분가치 = 해당 배터리에 포함된 개별 북미 배터리 부품의 증분가치의 합</p>
3 단계	<p>배터리 부품의 총 증분 가치 결정</p> <p>- 개별 배터리 부품의 증분 가치를 합산(또는 개별 배터리 모듈 가치를 합산)하여 결정</p>
4 단계	<p>북미에서 제조·조립된 가치(적격 배터리 부품 가치*) 계산</p> <p>[계산] 적격 배터리 부품 가치 = 2단계 북미 배터리 부품의 총 증분 가치 ÷ 3단계 배터리 부품의 총 증분가치</p>

- “배터리 부품*”을 “배터리의 일부를 구성하고 산업·화학·물리적 공정을 거친 하나 이상의 부품 및 구성 재료를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으로 정의함.

배터리 부품의 예) 음극 전극, 양극 전극, 고체 금속 전극, 분리막, 액체 전해질, 고체 전해질,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등 포함됨.

[KPMG 의견]

FTA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에 반입되었다가 국외 반출(수출)된 물품에 대해 '국외반출신고서'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를 적용할 수 있게 됨. 다만, FTA를 적용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류를 보관 의무를 지며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美 IRA 세부지침에 따라 양극 활물질 등이 '배터리 부품'이 아닌 '구성 재료'로 분류됨에 따라 구성 재료의 제조 공정이 핵심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됨. 이에 따라 韓 배터리 업체는 현재 제조 공정(중국 등으로부터 광물 수입 →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을 국내에서 제조 → 양극판·음극판 등 '배터리 부품'을 미국에서 제조)을 바꾸지 않아도 IRA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핵심광물 및 배터리부품 요건비율이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적격 핵심광물 인정을 위한 미국 및 미국 FTA 체결국 내 부가가치율(50%)이 '25년 이후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원산지 관리 및 향후 美 재무부의 발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 02-2112-7542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